

제품교육, 인쇄물 제작, 웹 홍보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도테라코리아(유)에서 IPC분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국내 관련법 규정과 도테라 방침 및 절차에 따라 제품 등에 관한 홍보 시, 심의 받지 않은 내용 또는 도테라 공식책자에 제시된 내용 이외의 자료 등을 인용하여 구두 또는 문서로 주장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개 강좌 교육 내용을 녹음, 녹화하여 무단으로 복제, 판매 및 배포한 행위 또한 "도테라 방침 및 절차 제 12조 3항과 4항"의 심각한 위배로 간주하여 적발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도테라 IPC로써 금지해야 할 행위>

1. 회사가 제작한 인쇄물 및 교육자료 이외의 자료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 회사가 제작한 자료를 사전승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편집하여 다른 자료화를 하거나 복사하여 사용하는 행위 포함
2. 제품 또는 사업기회 광고 시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거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3. 도테라 제품 및 관련 광고 시 다른 사람의 제품 체험담을 사용하거나 특정인의 스토리, 사진, 삽화에 대해서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게재하는 행위
4. 의사, 약사, 한의사, 대학교수 및 전문가가 인정, 추천 혹은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
5. IPC가 자신의 그룹에 판매, 배포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작하거나 본사의 행사 교육 또는 제3자의 교육자료, 교육 내용을 녹음, 촬영하거나 이를 무단 복제, 배포 또는 판매하는 행위
6. 도테라의 상호, 로고, 상표 제품명 또는 다른 여하의 지적 재산을 IPC가 제작한 광고 또는 자료에 사용하는 행위
7. 자신의 독립적인 웹사이트, 블로그 및 카페 등에 도테라 회사, 제품, 사업기회 등 관련 내용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 및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 또는 경매 웹사이트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
8.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회사, 제품, 사업 또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및 체험담 기타 자료 등을 보도자료, 기사 토크쇼 출연은 물론 기타 방송 미디어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행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도테라코리아 윤리강령부 02-2137-541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dōTERRA